



소아환자 진료기록 허위 작성 대학병원 인턴...“20일 면허정지 정당”

이
수
판
결

서울고법, A씨 보건복지부 상대 소송서 패소 판결
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환자 생명위협, 불신초래”

소아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맥박을 측정하거나 간호기록부를 보지 않고,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사의 면허정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냈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2014년 2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1월23일께 응급진료센터에 내원한 B양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의 분당 맥박은 137회였으나, A씨는 80회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치료를

받던 B양은 사망했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별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22일 A씨가 의사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일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맥박을 허위로 기재할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처벌보다는 소아응급환자 진료기록부 작성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비춰 보면 A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는 사건 당시 9명의 환자의 활력징후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 치료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응급실 인턴 인수인계장’에 재량껏 채워 넣으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도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 수련 과정 중이라도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5월단체 “유골, 5·18행불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무연고 유골 40구 수사 철저 촉구



5·18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기념재단) 대표들이 30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유골 40여구를 매장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5월단체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0구가 5·18 관련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5월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0여기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매장된 관련 기록,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철

저한 수사로 매장경위를 한 점의 흑없이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5월단체는 “옛 광주교도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3공수여단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학살해 현장에 직접 암매장했던 장소”라며 “관련 증언과 기록을 종합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나 그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광주교도소가 관리하지 않았고 아무런 기록이 없는 무연고 유골 40여기는 5·18 관련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굴 당시 지표면에서 불과 20cm밖에 되지 않은 곳에 묻혀 있던 정황 △매장 형태가 제3의 현장에서 수습된 유골들을 한데 모아 서둘러 매장한 모습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교도소수비대로 뒤편에서 발견된 점 △추가로 발견된 40여기의 유골은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대단히 비정상적인 매장’이라고 지적했다.

5월단체는 “유안검사를 통해 구멍이 난 두개골이 세 개가 확인됐고 어린아이의 유골로 추정되는 현격하게 작은 크기의 두개골이 발견됐다”며 “법무부 차원의 자체 조사나 검찰의 내사 수준의 조사가 아니라 매장의 경위와 매장에 참여한 인사의 확인, 매장에 관한 기록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법무부는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의 무연분묘 개장작업을 벌이던 신원 미상의 유골 약 40여구를 발견했다.

신봉우 기자



토요택배 완전 폐지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노사합의의 파행 규탄, 토토역배 완전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내 사진 유포됐는데…불법촬영 1/3은 ‘가해자 미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례 분석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 3분의 1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올 1~11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례 분석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기간 총 피해자 1936명, 피해 건수 3368건에 대해 콘텐츠 삭제 등 총 9만6052건을 지원했다. 피해자 가운데 여성은 1695명으로 87.6%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603명(31.1%)으로

1/3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전 배우자 및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464명(24.0%), 모르는 사람이 346명(17.9%)이었다.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없는 비율과 모르는 사람인 비율을 합치면 49%로 가해자 확인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연령별로는 피해자 자신이 연령을 밝히지 않은 929명(48%)을 제외하고, 20대가 479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291명(15%)으로 그 뒤를 이었다. 30대는

8.3%, 40대 2.3%, 50대 1.5%로 짐

계됐다.

피해유형은 유포 피해가 1001건(29.7%, 중복집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 875건(26.0%), 유포불안 414건(12.3%) 순이었다.

촬영장소는 사적공간이 2499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는 1044건(26.5%)이었다.

플랫폼별로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 삭제건수가 2만9090건(32.3%), 검색결과 삭제 지원이 2만8924(32%), 성인사이트 삭제지원이 2만5105(27.8%)였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흔들려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구강
검진

임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증기발견,
재활치료 증인 민박군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